

## ●환경부령 제1085호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04월 09일

환경부장관 인

###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항,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 본문,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6항,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·제4항, 같은 조 제5항 전단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5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원장” 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, “국립환경과학원의” 를 “화학물질안전원의” 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1. 화학물질안전원

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제49조의2제1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의2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의3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5호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



별지 제49호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 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

첨부서류	1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작성방법

국내 수입자란은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### 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### 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·변경승인·변경신고의 접수,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‘화학물질안전원장’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34386호, 2024. 4. 2. 공포, 2024. 4. 30. 시행)됨에 따라,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승인·변경승인·변경신고 절차,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·변경승인·변경신고 절차,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·변경승인·변경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 중 ‘국립환경과학원장’을 ‘화학물질안전원장’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<환경부 제공>